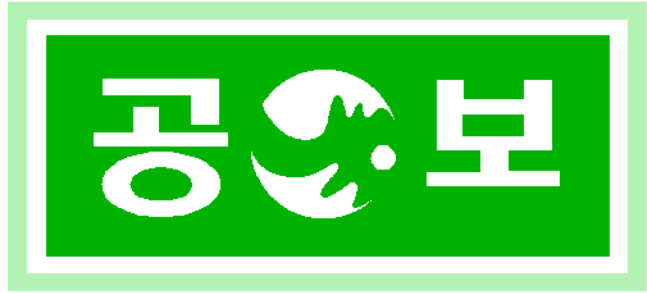
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 간	기 관 의 장



제 687 호 2011. 4. 11(월)

## 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고시 제2011-30호[하천 점·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(SK에너지)] ..... 2
- 울산광역시 북구고시 제2011-31호[하천 점·사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(주경동도시가스)] ..... 3

## 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고시 제2011-237호[소하천 공사시행(소하천 점용·사용)허가공고] ..... 4
- 울산광역시 북구고시 제2011-239호[현수막지정계시대 관리 민간위탁 계획 공고] ..... 5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문화홍보과(☎219-7207 행정7207)

울산광역시북구고시 제2011- 30호

## 고 시

「하천법」 제30조제6항 및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 점·사용 허가(변경) 및 실시계획인가(변경)하고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1년 4월 11일

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성 명	SK에너지 대표 박봉균		
주 소	시울 송도구 서민동 99번지		
점용위치	관곡동 127-4 관곡동 1284-4 순정동 1116 충곡동 1207-10 청곡동 1207-9 충곡동 1208-2 송정동 366-3 광명동 1284-7 광명동 1207-1 숙정동 848 광명동 1207-4	하 천 명	총평천
점용목적	송유관 이설(12인치, L=128m)	변경 점용면적 (㎡)	구 분 계 인시 영구 지방하천 940.06 881.2 58.86
점용기간	5월 31일 시 : 2011. 02. 24. ~ 2011. 05. 31. 5월 31일 년 : 2011. 02. 24. ~ 2015. 12. 31.		

울산광역시북구고시 제2011- 31호

## 고 시

「하천법」 제30조제6항 및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 점·사용 허가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허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1년 4월 11일

## 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성 명	(주)경동도시가스 대표 송세호		
주 소	울산광역시 북구 신장동 939번지		
점용위치	정광동 1208-2번지 정광동 1284-41번지 송장동 549번지 송장동 355 3번지 송상동 1110번지	하 천 명	창경천
점용목적	도시가스관 이설(Ø300, L=34m)	점용면적 (㎡)	구 분 계 일시 영구 지방하천 275.4 265.2 10.2
점용기간	일 시 : 2011. 4. 1. ~ 2011. 5. 31. 연 년 : 2011. 4. 1. ~ 2011. 12. 31.		

[별지 제11호서식]

공고 제 2011-237호

### 소하천공사시행(소하천 점용·사용)허가공고

소하천성미림시행령 제7조제4항(소하천성미림시행규칙 제10조제3항)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공사시행(소하천 점용·사용)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4월 11일

**울산광역시 북구청장** 직인

시행 (점용·사용)자	상호 및 명칭	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건축		
	대표자	최정순	주소	울산 북구 당시동 399 1번지
	소하천명	당사천		
	위치	당시동 729번지		
공사(점용·사용)개요	면적	영구: 12㎡	제한부지예상면적	㎡
	기간	일시 : 2011. 3. 21. ~ 2012. 1. 31. 영구 : 2012. 2. 1. ~ 영구		
	목적 및 사유	건축물 진출입기		
열람서류 : 설계도서 1부				

21302-11111일

210mm×297mm

95.5.11 승인

(인치용지(2급) 60g/㎡)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1-239호

## 현수막지정계시대 관리 민간위탁 계획 공고

「울산광역시 복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」 제28조 규정에 의거 현수막지정계시대 관리 민간위탁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4월 11일

### 울 산 광 역 시 복 구 청 장

□ 근거규정 : 「울산광역시 복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」 제28조,  
「울산광역시 복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」

□ 위탁기간 : 2011. 5. 1. ~ 2013. 4. 30.

□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

-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소재 옥외광고업 및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아래 각 호의 인력 및 시설·장비 등을 갖춘 관리 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
  - 「국가자격기술법」에 따른 옥외광고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명 이상  
  상이 포함된 정규직 종업원 3명 이상
  - 33지급미터 이상의 사무실
  - 작업차량, 사다리, 카메라 및 기타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장비
  - 손해배상 책임배상 등 보험가입(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법인·단체에 해당)

**□ 신청서 접수**

- 신청기간 : 2011. 4. 11.~4. 18. (1주간)
- 신청장소 :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
- 신청서류
  - 현수막지정게시대 위탁관리 지정 신청서
  - 옥외광고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
  - 사업계획서
  - 인력 및 기술자격 현황(자격증 사본)
  -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
  - 정비보유현황 등 그 증빙서류

**□ 수탁업체의 선정기준 및 방법**

-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중에서 관리 및 운영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리능력이 있는 업체 우선 선정
- 위탁업체는 1개 업체로 지정하되 울산광역시북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

**□ 수탁자의 임무 및 준수하여야 할 사항**

- 수탁자는 현수막 표시신고의 접수·처리 및 게시대에 신고된 현수막을 설치 및 철거하여야 한다.
- 수탁자는 현수막 표시 신고에 따른 신고수수료(도로점용료 포함) 및 민원서류 접수를 대행하여야 한다.
- 수탁자는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매일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지정게시대의 청결유지 및 진재물을 제거하여야 한다.
- 수탁자는 게시된 현수막의 관리 및 신고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미신고된 불법현수막을 설거하여야 한다.
- 수탁자는 훼손된 시설물을 보수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.

**□ 기타사항**

- 기타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(☎219-7482)로 문의

제 호		처리기간
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지정 신청서		30일
신청자	① 성 명	② 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 (       -       )
	③ 업 소 명 (법인단체명)	
	④ 주 소	
⑤ 영업정 소재지		⑥ 전 화 번 호
<p>「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」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현수막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지정을 신청합니다.</p> <p>  년            월         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 정 인    ❸</p> <p>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</p>		
※구비서류 1. 옥외광고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. 사업계획서(대행수수료 예상수입과 정비에 관한 사항 포함) 1부 3. 인력 및 기술자력 현황(자격증 사본) 1부 4.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5. 장디보유현황 등 그 증명서류 사본 1부		수 수 료   없 음